

영천동 70-9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명 : 영천동 70-9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2.09.22(목) ~ 2022.09.28.(수)

3.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업명 : 영천동 70-9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70-9
- 용도 :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 규모 : 752.9m²
- 시공사 : 제이건설주식회사
- 공사비 : 2,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나. 수행과업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다. 공사기간 : 2022.08.01 ~ 2023.07.31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공정계획서 참조[붙임1]

라. 정기안전점검 주요내용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해당점검 구분	해당공종	점검횟수	비고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회	정기점검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복합형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합벽지지대 설치시	2회	정기점검
	합벽지지대 해체시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공사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2회	정기점검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안전점검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 12,000,000원 (금일천이백만원)

5.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서대문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1-1327호(2021.10.21.)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09.22(목) ~ 2022.09.28.(수) 18:00

나. 접 수 처 : 서울시 서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eun1029@sdm.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식 일체 [붙임2]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서대문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서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8.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 및 점검 횟수의 변경 등으로 점검비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에 게시합니다.

- 붙임 1. 공사공정표. 1부.
 2. 신청서식 일체.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